

#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확보 방안 연구

김 윤 영\*

## 차 례

I. 서 론	IV.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전망과 치안대책
II. 국내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밀집지 역 범죄 현황	V. 결 론
III.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유형과 특징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장·단기 체류외국인은 지난 8월 24일 현재 100만명(100만254명)을 돌파하여 주민등록인구 4천913만여명의 2%를 차지함으로써,<sup>1)</sup> 단일민족과 혈통을 중시하던 우리나라도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입국 간소화 조치 등으로 저소득 국가 중심의 외국인 취업자들이 코리안드림을 안고 대량 입

\*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1) 법무부,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2007. 8. 24, p1.

국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취업자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싼 대도시 주변과 주요 산업단지 및 공단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으나, 취약한 국내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강력범죄와 조직폭력범죄,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 등에 의한 외국인 범죄를 증가시켜 치안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 의해 갈수록 흉포화(凶暴化)·지능화·광역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국인 정책기조가 외국인 방문취업제 허용,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 이민 허용정책 추진 등 개방과 인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sup>2)</sup> 외국인밀집지역은 문화·종교·인종간의 갈등 등으로 범죄 빈발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5년 프랑스 이민자들(아랍계 저소득층 등)의 대규모 소요사태(2005.10.27-11.17)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 외국인밀집지역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 중심의 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로 집단저항이나 대규모 폭력시위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현재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처는 일시적, 단편적, 미온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실태를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범죄전망과 대책을 통해 효율적인 치안확보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이 글은 기본적으로 문헌적 접근과 통계적 접근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분석에 주로 사용된 연구 자료는 선행연구의 심층면접 자료와 통계자료, 외사경찰 실무자와의 전화인터뷰 등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자료로는 국내서적, 논문, 간행물, 유관기관 정책연구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자료,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자료 등

2) 전문가들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이내 150만명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을 참고하였고, 통계자료는 경찰청 경찰백서, 법무부의 법무연감,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출입국 관리자료,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대검찰청의 종합심사분석, 검찰연감 등을 활용하였다. 전화인터뷰는 외국인밀집지역을 담당하는 외사경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의 보고서를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외국인 범죄의 개념과 국내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밀집지역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한 뒤에,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전망과 치안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외국인 범죄의 개념

#### 가. 외국인과 외국인 범죄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헌법(2조1항)은 ‘대한민국이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sup>3)</sup>는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형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sup>4)</sup> 즉, 외국인의 국내 실정법 위반범죄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외교사절과 준외교사절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90일 이상) 거류(居留)외국인과 방문·관광 등 목적의 단기(90일 이내)체류 일반 외국인의 범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인 범죄는 ‘입국관련 범죄’, ‘체류 중 범죄’, ‘범죄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외국체류 한국인의 범죄피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5)</sup>

#### 나. 외국인밀집지역의 형성과 범죄

취업 목적의 체류외국인들은 출퇴근이 용이하고 거주비가 비교적 싼 공단지역이나 영세 제조업체들이 산재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들은 생활비 등

3) 외국인범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나, 형법 제5조에서 정한 내란, 외환죄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다.

4) 황인정,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검찰□□통권 제104호, 대검찰청, 1992, p.215.

5) 최인섭·최영신,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p.201-202.

체류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같은 국가 및 지역 출신의 외국인들이 공동거주(합숙·자취 등)를 통해 자연스럽게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외국인밀집지역은 외국인들이 자국(自國)문화를 향유 할 수 있어 이국(異國)땅에서의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고, 상부상조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기도 하나, 동료집단 내에서 절도 등 생계형 범죄와 개인적 불화,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폭력과 강력범죄, 실업을 이유로 범죄를 자행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체류외국인들이 동료집단을 통한 자국문화 몰입은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인종간의 문화적 갈등을 유발시켜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제한과 차별, 소외감 등을 극복하고자 자국민끼리의 결속력을 통해 세력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합법적 수단 즉, 사회일탈이나 범죄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란 외국인밀집거주지역에서 등록외국인<sup>6)</sup> 또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를 의미하며, 동 지역에서는 이질문화, 조국애, 민족애, 동료애 등을 기초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 II. 국내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밀집지역 범죄현황

### 1.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 현황

#### 가. 외국인 출입국자 현황

2006년도의 외국인 출입국자 총수는 12,312,871명으로 2005년도의 11,999,876명보다 312,995명(2.6%) 증가했고, 입국자 총수는 6,241,256명으로 2005년(6,008,527명)에 비해 232,729명(3.9%)이 증가하였다. 지난해의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별로 나누어 보면

6) '등록외국인'이란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사증을 소지하고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로 '장기체류외국인'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3.6%(2,319,87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 14.7%(780,239명), 미국인 11.3%(603,741명), 대만인 6.9%(368,964명), 홍콩인 2.5%(134,520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표 2-1>에서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2005년에 비해 체류외국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으로 194,670명(33.2%) 늘었고, 일본은 101,532명(4.2%) 줄었다. 이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 국민들의 입국자가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1> 2006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분포(승무원 제외)

구 분		국 가								
		일본	중국	미국	타이완	홍콩	태국	필리핀	러시아	
'06년	입국자(명)	2,319,874	780,239	603,741	368,964	134,520	89,752	67,941	62,559	
	'05년 대비(%)	95.8	133.2	102.9	95.8	85.2	110.1	115.1	101.2	

\* 자료: 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18, 일본이 중국보다 입국자수가 많은 것은 단기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자가 많았고, 중국의 경우 돈벌이를 위해 입국한 중국동포와 한족이 많았기 때문이다.

#### 나. 체류외국인 현황

2006년도 말 현재 국내 총체류외국인은<sup>8)</sup> 910,149명으로 전년도 보다 21.8%(162,682명) 증가하였다. <표 2-2>에서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로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는 반면에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1.8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체류외국인이 급증하는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인 동포의 유입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인한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

7) 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p.18.

8) 총체류외국인은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의미한다. 합법체류자는 등록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를 말하고,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 이외의 외국인체류자를 의미한다.

르게 변모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2>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910,149
국민	44,553천명	44,553천명	45,985천명	48,294천명	48,297천명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1.88

\* 자료: 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18.

2006년도 기준 국가별 체류외국인은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일본 등의 순이며, 중국은 중국동포에 대한 우대정책인 취업관리제<sup>9)</sup> 및 결혼이민자의 수, 미국은 외국국적 동포의 방문동거와 주한미군의 수,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등은 산업연수생과<sup>10)</sup> 고용허가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국내 체류 외국인 910,149명 중 합법체류자는 698,161명(76.7%), 불법체류자는 211,988명(23.3%)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외국인이란 장기, 단기 구분 없이 불법체류를 포함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한다.<sup>11)</sup>

<표 2-1>에서와 같이 금년 8월 현재 국가별 체류외국인 변화추이는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이 2005년부터 필리핀을 제치고 3위를 유지하고 있고,<sup>12)</sup> 일본이 중국, 미국 등보다 입국자 수는 많았지만 체류자 수가 적은 이유는 단기 관광목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9)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취업 우대 정책의 하나로 음식점, 간병인, 청소업 등 내국인 기피가 심한 서비스 분야에 일정기간 취업을 허용하여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대상자의 취업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하였다.

10)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산업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 후 취업자로 전환하는 체제이다. 1992년 도입되어 국내 3D업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

11) 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259.

12) 법무부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p.2.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유학생, 취업목적 근로자(단순인력,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등이 증가세를 보였고, 2006년 취업관리제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수는 86,44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 2. 외국인밀집지역 현황

<표 2-3>에서와 같이 2006년 6월말 현재 1천명이상 외국인밀집지역은 총 104개 지역으로 전국 248개 시·군·구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4개 외국인밀집지역에는 국내 총 체류외국인 840,696명 중 66.3%인 557,22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밀집지역(31,336명)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우즈베키스탄인, 몽골인, 네팔인, 방글라데시아인 등이 집단거주하고 있다.

<표 2-3> 외국인밀집지역 분포 현황

('06. 6월말 기준, 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구 분	합계	10,000명이상	5,000~9,999명	1,000~4,999명	999명 이하
시·군·구(지역)	248	17	23	64	144
비율(%)	100	6.8	9.3	25.8	58.1
인원(명)	840,696	251,138	153,085	152,999	283,474
		557,222			
비율(%)	100	29.9	18.2	18.2	33.7
		66.3			

\* 자료: 경찰청 외사국

외국인밀집지역 노동자들은 출퇴근이 용이하고 주거비용이 비교적 싼 주거지역이나 산업·공단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단칸방에 몇 명씩 공동거주하고, 대부분 3D 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영동포구·구로구(가리봉동)·금천구 일대,

13) 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258.

인천 남동구의 공단지역, 안산시의 반월공단 주변(원곡동) 등은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이다.

<표 2-4>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별 외국인밀집지역 분포현황

사무소별	밀집지역수	분포지역
서울	8개소	①구로구 구로동, 가리봉동 ②금천구 가산동 ③영등포구 대림동 ④성동구 성수동 ⑤동대문구 동대문 ⑥성북구 하월곡동 ⑦종로구 ⑧종구
의정부	10개소	①남양주 화도읍 녹천리 마석 정생공단 ②남양주 평내동 협동산업단지 ③양주시 유양동 유양공단 ④양주시 남면 상수리 검준공단 ⑤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양문공단 ⑥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신평공단 ⑦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청산농원 ⑧동두천시 동두천동 염색공단 ⑨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고양산업단지 ⑩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일산가구공단
수원	2개소	①화성군 정남면 ②평택시 포승면 포승공단
인천	5개소	①안산시 원곡동 ②시흥시 정왕1동 ③시흥시 정왕3동 ④인천시 서구 석남동 ⑤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부산	4개소	①사상구 사상공단 ②사하구 신평·장림공단 ③김해시 장유면 김해공업단지 ④양산시 유산동 양산공단
대구	4개소	①달서구 성서공단 ②북구 제3공단 ③달성군 달성산업단지 ④경북 구미시 구미 1-4공단
마산	6개소	①창원시 신흠동 장원기계공단 ②경남 거제시 아주동 옥포산업기지 ③경남 마산시 봉암동 마산수출자유지역 ④경남 진해시 남양동 마천지방산업단지 ⑤경남 함양군 칠서면 함안칠서산업단지 ⑥경남 진주시 상평동 상평지방산업단지
울산	4개소	①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고연공단 ②울산시 북구 효문공단 ③울산시 범서면 구영리 택지개발지구 ④울산시 온산읍 덕신리 공단
대전	3개소	①안산시 음봉면 산동리·원대리 일대 ②천안시 성환읍·성거읍 일대 ③당진군 순성면·송악면 일대
청주	3개소	①음성군 대소면 부윤리·삼정리 ②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③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광주	2개소	①광주시 광산구 환암동 하남공단 ②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계		51개소

\* 자료 : 2006년 12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조사집행과;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pp.42-43. 재인용.

### 3.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 실태<sup>14)</sup>

#### 가. 외국인범죄 발생 추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도시 주변이나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모여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대도시나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밀집지역,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상

14) 외국인밀집지역 범죄 분석은 범죄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범죄검거 건수 위주로 분석하였다.

가나 유흥지역, 공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sup>15)</sup>

<표 2-5>에서와 같이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는 지난 5년간 다소 감소한 해(2005)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2년 대비 2006년에는 142.4% 증가하였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전체 범죄검거(1,483,011명)<sup>16)</sup> 중 외국인 범죄검거(12,657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0.85%로 아직 미약한 상태이고,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이 한국 총인구의 1.88%(<표 2-2>)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범죄율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총 범죄발생이 감소<sup>17)</sup>하는 반면에 외국인의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표 2-5> 2002~2006년 외국인 범죄 검거현황

연 도	구 분	범 죄 검 거(명)	증 감(명)
2002		5,221	+20.6%(+893명)
2003		6,144	+17.7%(+923명)
2004		9,103	+48.2%(+2,959명)
2005		9,042	-0.68%(-62명)
2006		12,657	+40.0%(+3,616명)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05년도 말 현재 전국 234개 경찰서 중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외국인 피의자를 80명이 상 검거한 경찰서는 26개서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검거율(3,703명)은 총 외국인 범죄발생검거(9,042명)의 41.0%에 이르고 있어 외국인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천서(309명), 용산서(306명), 구로서(253명), 혜화서(204명), 안산서(252명)는 200명 이상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sup>18)</sup> 서울의 금

15) KBS 1TV, “외국인 백만 시대, 국경 없는 대한민국”, 2007.7.15(일) 20시.

16) 경찰청, □□2006 경찰백서□□, p.200.

17)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찰에서 접수한 총 범죄발생 현황은 증가되거나 감소된 해도 있었으며, 특히 2005년 11.94%(235,061), 2006년 0.81%(14,047) 감소하였다(□□2006 경찰백서□□, pp.199-200).

18) 경찰청 외사국.

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동과 가리봉동, 안산시 원곡동 등은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비교적 주거비가 싸고 공단 주변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인 안산시의 경우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외국인 범죄율은 2005년 1.38%에서 2006년 1.50%로 증가하였고, 2006년 외국인 범죄발생은 2005년(252명) 대비 27.0%(320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경찰서는 안산시의 전체 외국인 범죄의 약 85-95% 정도가 외국인밀집지역인 원곡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9)</sup>

결국 외국인밀집지역은 외국인 범죄의 지속적 증가와 슬럼가로 전락되어 우범지역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실태(국적별, 죄종별, 연령별, 성비별 등)의 체계적인 파악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비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죄종별 외국인 범죄

<표 2-6>에서는 최근 5년간('02-'06) 외국인 범죄검거 죄종별 현황으로 외국인 범죄피의자 검거는 총 42,167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지능범 12,936(30.7%)명, 폭력 10,762(25.5%)명, 절도 3,846(9.1%)명, 마약 662(1.6%)명, 강도 625(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죄종별 현황

연도 \ 구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	구속	불구속
'02년	5,221	47	100	41	599	1,865	568	29	99	1,873	881	4,340
'03년	6,144	32	137	49	630	2,071	834	49	120	2,222	1,134	5,010
'04년	9,103	60	157	52	825	2,424	1,965	40	218	3,362	1,800	7,303
'05년	9,042	42	124	62	821	1,919	3,340	32	152	2,550	2,169	6,873
'06년	12,657	72	107	68	971	2,483	6,229	52	73	2,602	1,156	11,501
계	42,167	253	625	272	3,846	10,762	12,936	202	662	12,609	7,140	35,027
'05년 대비 '06년 증감(%)	+40.0	+71.4	-13.7	+9.7	+18.3	+29.4	+86.5	+62.5	-52.0	+2.0	-46.7	+67.3

\* 자료: 경찰청 외사국

19) 안산 경찰서 형사계 담당자 인터뷰 자료(2004.11-2005.11); 이승희, “외국인 노동자의 일탈성향 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2005, p.59 재인용.

2006년도 외국인 범죄의 최종별 피의자 검거 증감율은 전년대비 지능범(+86.5%), 살인(+71.4%), 성폭력(+62.5%), 폭력(+29.4%), 절도(+18.3%), 강간(+9.7%) 순으로 증가하였고, 마약(-52.0%), 강도(-13.7%) 등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외국인밀집지역 범죄는 지능범이 급증할 것이고, 폭력, 절도 등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산시의 경우 2005년 대비 지난해 최종별 외국인 범죄 증가는 살인범죄(800%)와 지능범죄(120%)가 급증했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18.8%), 절도범(17.6%)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한 사건에 다수의 공범 피의자가 연계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sup>20)</sup> 그리고 외국인 범죄건수로는 폭력범(120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지능범(99건)<sup>21)</sup>과 절도범(40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으로, 외국인들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분노로 폭력이나 절도를 저지르게 되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불안을 해결하고자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의 지능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폭력사건은 중국인에 의한 폭력싸움이 빈발하고, 대부분 중국인 내부간의 싸움으로 전반적으로 구속사건은 감소되는 반면에 불구속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표 2-7> 안산시 외국인 범죄 최종별 현황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범죄	기타
	합계	구속	불구속							
2005년(명)	252	62	190	2	12	2	34	101	45	56
2006년(명)	320	44	276	18	6	1	40	120	99	36
전년대비 증감(%)	+27.0	-29.0	+45.3	+800	-100	-50	+17.6	+18.8	+120	-35.7

\* 자료: 안산 단원경찰서(안산시) 정보보안과

20) 단원경찰서 의사계 담당자 전화인터뷰(2007.8.4).

21) 2006년 안산시의 외국인 지능범죄는 2005년 대비 12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다. 국적별 외국인 범죄

<표 2-8>은 지난 5년간('01-'05)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범죄검거 현황을 보여준 것으로,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범죄 24,094명 중 14,884(6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16.5%), 러시아(6.1%), 베트남(3.8%), 파키스탄(3.5%)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범죄 죄종은 중국인(조선족, 한족)의 지능범, 러시아·베트남인은 절도, 미국·파키스탄·일본·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인 등은 폭력범이 많았다.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외국인밀집지역의 폭력범죄는 민족간 문화적 차이와 갈등에 따른 사소한 시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2-8> 외국인 범죄 검거 국적별·죄종별 분류('01-'05)

단위: 명(%)

순 위	국적	죄종	합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폭력	마약류	기타
1	중 국		14,884(61.8) (100.0)	137 (0.9)	206 (1.4)	40 (0.3)	742 (5.0)	4,482 (30.1)	5,945 (40.0)	38 (0.3)	37 (0.2)	3,257 (21.8)
2	미 국		3,964(16.5) (100.0)	5 (0.1)	51 (1.3)	37 (0.9)	283 (7.1)	1,388 (35.0)	279 (7.0)	12 (0.3)	73 (1.8)	1,836 (46.5)
3	러시아		1,464(6.1) (100.0)	11 (0.8)	61 (4.2)	5 (0.3)	372 (25.4)	289 (19.7)	31 (2.1)	5 (0.3)	115 (7.9)	575 (39.3)
4	베트남		922(3.8) (100.0)	5 (0.5)	70 (7.6)	1 (0.1)	280 (30.4)	153 (16.6)	60 (6.5)	4 (0.4)	0 (0.0)	349 (37.9)
5	파키스탄		849(3.5) (100.0)	0 (0.0)	16 (1.9)	23 (2.7)	79 (9.3)	173 (20.4)	144 (17.0)	18 (2.1)	2 (0.2)	394 (46.4)
6	일 본		652(2.7) (100.0)	0 (0.0)	1 (0.2)	3 (0.5)	29 (4.5)	154 (23.6)	81 (12.4)	4 (0.6)	8 (1.2)	372 (57.0)
7	필리핀		623(2.6) (100.0)	7 (1.1)	10 (1.6)	10 (1.6)	51 (8.2)	161 (25.8)	42 (6.7)	3 (0.5)	59 (9.5)	280 (45.0)
8	태 국		399(1.6) (100.0)	5 (1.3)	0 (0.0)	2 (0.5)	12 (3.0)	73 (18.3)	13 (3.3)	0 (0.0)	36 (9.0)	258 (64.6)
9	인도네시아		337(1.4) (100.0)	10 (3.0)	12 (3.6)	0 (0.0)	33 (9.8)	106 (31.5)	47 (14.0)	1 (0.3)	1 (0.3)	127 (37.5)
	계		24,094(100.0) (100.0)	180 (0.7)	427 (1.7)	121 (0.5)	1,881 (7.8)	6,979 (29.0)	6,642 (27.6)	85 (0.3)	331 (1.4)	7,448 (31.0)

\* 자료: 경찰청 외사국

2005년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는 중국, 미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었으나, 2006년은 전년대비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대만, 베트남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순으로 감소하였다(경찰청 외사국). 따라서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대만, 베트남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중국인에 의한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폭력에 대한 좀 더 관대한 문화를 가진 중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대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원곡동과 같은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공통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한 민족 집단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갈등에 기초한 폭력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라. 발생지별 외국인 범죄

<표 2-9>는 지방경찰청별 외국인범죄 검거현황으로 2006년 외국인범죄는 서울지역 47%, 경기지역 24.9%, 인천지역 7.5%, 부산지역 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합하면 79.4%로 외국인범죄의 대다수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외의 외국인밀집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표 2-9> 2006년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검거 현황

지방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명)	12,657	5,946	694	248	951	145	3,149	187	200	300	140	155	232	253	57
비율(%)	100	47.0	5.5	2.0	7.5	1.1	24.9	1.5	1.6	2.3	1.1	1.2	1.8	2.0	0.5

\* 자료: 경찰청 외사국

서울시의 경우 용산구·금천구·구로구·중구·강남구 등 5개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범죄는 서울 전체 외국인범죄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죄종별 특징을 보면, 울산에서는 미군밀집지역인 미군부대와 이태원 중심으로 주한미군에 의

한 절도와 폭력 범죄가, 금천·구로는 중국인 밀집지역인 가리봉과 독산동 중심으로 문서위조 등 지능범죄가 각각 빈발했다. 가리봉동은 1만명 가량의 중국인과 중국동포가 밀집거주 하고 있다. 중구와 강남은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으로 광희동과 강남역 주변을 중심으로 절도·폭력범 등이 많았다(서울청 외사과).

마. 불법체류자의 범죄

2002년 불법체류 외국인은 289,239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03년 불법체류외국인 184,199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 이후 138,056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일부 합법화 조치자가 재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225,27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표 2-10>에서와 같이 체류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동남아 등 저소득 국가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2005년 총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의 국적별 비율

구 분	계	중 국	태 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기타
총 체류자	747,467	282,030	34,188	38,057	15,116	25,599	38,902	22,475	13,834	277,266
불법 체류자	180,792	79,377	11,146	13,249	13,605	5,521	10,838	10,354	6,321	30,381
비율(%)	24.2	28.1	32.6	34.8	90.0	21.6	27.9	46.0	45.7	11.0

\*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표 2-11>에서와 같이 지난 3년('03-'05)간 서울지역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는 총 외국인 범죄의 24.9%라는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음을 볼 때, 외국인 불법체류가 외국인 범죄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외국인 범죄 대비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서울)

구 분	계	2003	2004	2005
외국인 범죄(명)	8,992	2,498	3,172	3,322
불법체류자 범죄(명)	2,242	806	623	813
비율(%)	24.9	32.3	19.6	24.5

\*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 바. SOFA 범죄

2005년 미군인 범죄는 절도 20%(40명), 폭력 60%(120명),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등이 10%(20명)로 절도와 폭력이 80%를 점유하였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용산, 의정부 등)일수록 미군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sup>22)</sup>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범죄는 200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sup>23)</sup>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 △한국당국의 강력한 재판권 행사 △반미감정(2002.6.13 여중생 사망사건)과 테러위협이 확산되자 주한미군 측에서 자체경계태세, 방범교육 등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sup>24)</sup>

2005년 신분별 SOFA 범죄는 미군인이 126명(63%)이고 미군속 등(미군속, 미군인 및 군속의 가족, 초청계약자)은 74명(37%)으로 나타나고 있어 미군속보다는 미군에 의한 범죄가 높게 나타났다.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현황을 보면 1991년 1.7%, 1996년 4.4%, 2000년 7.9%, 2005년에는 23.7%로, 1991년에 비해 2005년에는 재판권 행사율이 14배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1991년 2월 한미 SOFA 개정으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측의 형사재판권 형사 범위가 크게 늘어났고, 그와 더불어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로 보

22)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p.36.

23) 2002년 6월 13일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주한 미군 측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미군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4) 2006년 8월말 현재 강도와 폭력(내국인과의 사소한 시비)을 비롯한 각종 범죄사건은 전년(128명)에 비해 24%(31명) 증가하고 있다.

인다.<sup>25)</sup>

### 사. 마약사범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및 외국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와 경찰과 검찰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표 2-12>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구 분 \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단속사범수(명)	70	88	86	203	162	116
전년대비 증감(%)	+204.3	+25.7	-2.3	+136.0	-20.2	-28.4

\* 자료 : 대검찰청, □□2006 마약류 범죄백서□□, 2007, p.119.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미국(28명), 중국(11명), 캐나다(11명), 나이지리아(7명), 가나(7명), 파키스탄(5명), 이란(4명) 순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네덜란드(2명), 아일랜드(1명), 아프가니스탄(2명), 키르기즈스탄(1명) 국적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처음으로 발생 하는 등 외국인 마약류범죄의 국적이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5년은 스리랑카, 이집트,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에 의해 처음으로 마약류사범이 발생한 바 있다.<sup>26)</sup>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의 불안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소외감 등으로 마약이나 환각제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주거비용이 비교적 싼 공단주변의 쪽방에 몇 명씩 모여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한명만 마약을 해도 공범이 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마약밀매거래는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p.32.

26) 대검찰청, □□2006 마약류범죄백서□□, 도서출판성민, 2007, p.123

### 아. 외국인 범죄자 처리 결과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지난해는 외국인 범죄자 12,657명을 단속하여 1,156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구속은 46.7%가 감소하고 불구속은 67.3%(11,501명) 증가한 것이다(<표 2-6> 참조). 이러한 결과는 경찰의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의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으로 강력범죄의 확산을 예방한 것이며, 구속이 감소하고 불구속이 급증한 것은 경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불구속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인권을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

## Ⅲ.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유형과 특징

### 1. 외국인 범죄의 원인과 유형

#### 가. 외국인 범죄의 원인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나, 본고에서는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문화적 갈등, 사회적 기회박탈, 상대적 빈곤, 주도권 분쟁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불법체류, 불법취업

체류외국인 중 불법취업은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많으며, 이들 대다수는 제조업, 건설업 등 3D 업종의 불안정한 단순노동자로 교육수준이나 성향은 일정치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체류·불법취업 외국인은 직업의 불안정성, 개인적 환경적응 능력의 부족, 경제적 빈곤 등의 요인으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 단기체류나 예술홍행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풍속관계사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sup>27)</sup>

27) 취업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윤락행위를 하는 러시아 여성이 증가하는 등

결국 외국인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외국인범죄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여성 불법취업 율락행위는 퇴폐문화를 조장하고, 이들과 연계된 외국범죄조직의 입국과 취업 알선 조직들이 외국인 율락여성의 수입금 갈취 등 제2의 범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사회문화적 갈등

외국인들은 한국사회와는 다른 이질적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한 후 한국문화의 상이한 행동규범과 사회에 대한 갈등과 불만, 소외감, 원망상태가 초래되어 죄의식 없이 비행이나 사회일탈, 나아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다시 말해 외국인들 자신만이 가지는 행동규범과 가치관이 한국사회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작용하여 적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여 범죄행위로 나타난다.<sup>28)</sup>

예컨대 일부 아랍과 아프리카 기혼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여성들과 혼인하게 되는데, 이는 이슬람권과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 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호적법의 경우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어,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기혼임을 숨기고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국여성(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을 유혹하여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3) 사회적 기회박탈

‘코리아 드림’이라는 열망을 안고 국내에 입국한 저소득 국가의 노동자들이 한국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인간적 소외감과 적대감, 차별대우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일탈이나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행위까지 이르게 된다.

동남아 외국인들과 중국동포들은 악덕 고용주에 의한 임금체불, 과도한 업무시간 강요, 산업재해, 고용주 및 한국인들에 의한 무시와 홀대, 욕설 및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는데,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피해가

불법취업 적발인원 중 접대부로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외국인 여성의 불법취업 문제도 범죄성과 관련이 있다(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p. 60).

28)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p.184.

반복되면서 반감으로 인한 즉흥적·우발적 범죄가 발생한다.

#### (4) 상대적 빈곤감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2005년 기준 97만원 수준으로<sup>29)</sup> 이들의 임금을 자국의 임금과 비교하면 약 10배가량 많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전문직종 취업자는 고임금을 받고 있어 외국인 취업자의 임금은 이중적 구조를 보인다.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자국 내의 노동자보다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면 적은 임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입국경비 마련과정에서 진 채무변제,<sup>30)</sup> 고국 가족의 생계 책임, 저축 등으로 생활수준은 생계유지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만 하는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결국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내국인이나 고소득의 다른 외국인에 대하여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빈곤감이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31)</sup>

#### (5) 주도권 분쟁

조선족의 폭력조직, 파키스탄인들의 폭력조직, 러시아 마피아,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 외국인 범죄가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들 조직들간의 이권다툼으로 상호 알력이 생기고,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조직과 주도권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의 파벌싸움, 상대 집단과 조직에 대한 공격과 보복 등을 자행하고 있다.

29) “외국노동자 절반 임금 못받아”, <국민일보>, 2005년 8월 25일자.

30) 2005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밝힌 외국인 노동자 310명을 대상으로 한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평균 4,161달러로 2002년 산업연수생이 2,995달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3,063달러를 쓴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월 평균 임금은 97만4966원, 월 평균 노동시간은 280.4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에 응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 43명 중 3명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으며 월급도 남자 외국인 노동자보다 13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외국노동자 절반 임금 못받아”, <국민일보>, 2005년 8월 25일자).

31) 범죄성과 빈곤의 관련성을 긍정하는 학자들이 제시한 논거를 보면 첫째, 수행자와 기타 범죄자 집단 가운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빈곤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경제상태가 서로 다른 지역의 범죄 및 범죄율을 서로 비교할 경우 빈민지역 등 경제상태가 낮은 지역의 범죄 및 범죄자의 발생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들고 있다(신진규, □□형사정책 1□□, 법문사, 1997, p.253).

## 나. 외국인의 범죄유형

외국인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출입국 관련 범죄, 체류 중에 범하는 범죄, 범죄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외국체류 한국인의 범죄피해로 대별하여 고찰한다.<sup>32)</sup>

### (1) 출입국 관련범죄

외국인의 출입국 범죄는 여권의 위·변조나 사증의 위조와 같이 각종 서류위조의 부정취득에 의한 불법입국이 가장 많다. 이들의 입국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불법취업을 하는데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로 입국하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브로커들이 위조한 문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5년 9월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동포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인과 위장결혼 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2명, 위장 결혼을 한 한국인 7명과 중국동포 7명이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로 적발(3명 구속, 6명 불구속, 7명 기소중지)되었다. 2004년 5월경부터 8월 사이에는 방글라데시인이 속칭 신공항과 행동대원인 한국인과 공모하여 불법입국하려는 방글라데시인들을 1인당 100-400만원씩을 받고 모집한 후 방글라데시인 10명을 허위초청(2명 구속)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 (2) 체류 중에 범하는 범죄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폭행, 절도, 사기 등 그 범위도 다양하다. 이 유형의 범죄는 외국인 범죄의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4월 25일 중국동포 피의자 2명은 한국인 4명과 공모하여 대구 달서동 보성 은하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한국인 중소기업사장)를 전기 충격기 등을 이

32) 서거석,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비교형사법연구□□제5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pp.441-444.

용하여 실신시킨 후, 경북 칠곡군 자동차극장으로 끌고 가서 신용카드 3매와 현금 20만을 강취한 후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형으로 하여금 1억원을 송금하게 하여 강취한 후 도주하였다가 피의자 1명과 한국인 공범 2명이 인질강도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 (3) 범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에는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있다. 이들이 범하는 범죄는 범죄조직에 의하여 자행된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의 성격을 띠며, 이 중 일부 범죄는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되거나 국제범죄조직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범죄의 특징을 갖기도 한다. 국제범죄조직은 외국산 농산물과 귀금속 등의 밀수, 마약 또는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외국인 밀입국 알선, 절도, 사기범, 폭력조직의 원정 범죄 등을 자행하고 있다.<sup>33)</sup>

국제범죄조직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범죄 중 하나가 외국인노동자의 불법 송금이다. 불법 송금은 본국의 가족에게 풍돈을 부치는 ‘생계형 환치기’를 넘어 마약, 테러, 사기 등을 자행하는 국제범죄조직의 자금 유통경로나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의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평균 10% 이상의 수수료에다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왈라’(지하은행)를 많이 활용한다. 2004년 9월과 11월 부산에서 방글라데시인들이 만든 ‘하왈라’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거래액은 440억원 규모였으며, 2005년 5월에는 거래액이 600억에 달하는 이란인들의 ‘하왈라’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외국의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범행수법이나 범죄 후 도피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예행연습을 거친 다음, 단기간에 연속범행을 자행한 후 국외로 도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의 범행은 위폐와 마약유통, 환투기, 불법 자금세탁 등 지능적인 분야까지 접근하고 있다.

33) 경찰청, □□2006 경찰백서□□, p.426.

#### (4) 외국체류 한국인의 범죄피해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이 외국인 범죄조직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고 김선일씨 피랍사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원양어선 선원과 건설회사 직원 피랍사건,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에서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23명 피랍(2007.7.19)사건, 중국방문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되어 현금을 강취 당한 사례 등이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 2. 외국인 범죄의 특징

외국인밀집지역의 중심축인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회일탈 행위에서 시작되는 범죄가 빈발하고, 외국인들 간의 갈등(자국민에 대한 이권개입이나 착취)이나 내국인과의 갈등(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외국인 범죄가 조직화, 전문화되고 있다. 외국인밀집지역 불법체류자들은 절도단을 조직한 후 공구를 구입하여 직접 범행도구를 만들고 범행지역, 방법, 대상 등을 치밀하게 사전 모의한 다음 예행연습까지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품 절취, 신용카드 위조, 상습도박, 전화사기를 위해 범죄행위가 조직화,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현재 흑사회 분파인 뱀파, 호박파, 흑룡강파, 상해파 등 4개파 범죄조직원이 중국동포들이 밀집한 서울 구로동, 가리봉동, 경기도 안산시 일대를 근거지로<sup>34)</sup> 자국민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 명목의 금품 갈취, 살인, 강도, 마약거래, 인신매매, 청부폭력, 세력다툼 등에서부터 수산물거래, 무역, 돈세탁 등 범죄가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다.<sup>35)</sup> 최근에는 불법체류자가 밀집된 천안·아산에 태국의 폭력조직인 ‘반타이’에 의한 고리대금과 사설복권판매, 마사지 발미 성매매 등의 범죄행위가 자행되고 있다.<sup>36)</sup>

34) <중앙일보>, 2004년 4월 28일.

35) 박광민,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계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안”, 학술진흥재단, 2002, p.218.

36) “불법체류자 밀집된 천안·아산에 태국 ‘조폭’ 활개”, <중도일보>, 2007.6.12.

둘째,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계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에 의한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과 위조달러 반입, 총기밀매 등은 국제적인 밀수조직이나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등은 주변국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침투를 기도하고 있다.<sup>37)</sup>

셋째, 외국인 범죄가 초 국가화·광역화·기동화되고 있다. 최근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들이 전국의 공단과 산업단지, 공장과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거주함으로써, 과거 서울, 경기의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던 외국인범죄가 전국의 대도시권과 인근의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2-3일간 머물면서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전국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 후 제3국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sup>38)</sup>

넷째, 외국인 범죄가 집단화·정치세력화 되고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모이고, 이들이 조직화 집단화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국가의 불법체류자들은 수 명에서 수십 명 단위로 범죄 집단을 구성하여, 자국민의 산업기술연수원생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며 살인,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신분과 인권문제, 임금체불, 강제추방, 사망자 시신의 본국송환, 상해 등을 대변하고자 이들을 지원해주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치세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11월 16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강제추방저지' 집회를 개최하여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한 바 있고, 2006년 4월 3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넘겼다하여 동료 외국인 산재 노동자들이 인천 부평경찰서에 몰려가 항의하는 등 거리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섯째, 외국인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는 강도, 절도, 성범죄 등을 비롯하여 사기, 불법 연예활동과 매춘, 밀수, 마약, 밀입국, 여권·달러·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지능범죄에 이르기까지

37)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p.332.

38) 경찰청, □□외국인범죄 종합대책□□, 2003, p.124.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은 다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적인 갈등에 기초한 경범죄부터 강력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가 고르게 발생되는데, 외국인끼리 다툼에 의한 경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다.

여섯째, 외국인 범죄가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는 살인 12명, 강도 64건, 강간 14건이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살인 42건, 강도 124건, 강간 6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sup>39)</sup> 2007년에는 중국인에 의한 토막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점차 흉포화되어 가고 있다.

일곱째, 외국인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 친인척을 둔 다른 동포의 여권 위조를 비롯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신용카드 관련 범죄, 가짜 납치협박, 세금·건강보험료·전화요금 체납을 미끼로 한 보이스 피싱(국제전화 사기단) 등의 지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여덟째, 주거환경과 민족애·동료애로 인한 공범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거비용을 줄이고자 단칸방에<sup>40)</sup>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공범이 발생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불안감과 외로움 등으로 마약이나 환각제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외국인은 민족애나 동료애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사건에 다수의 공범자가 연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외국인 형법범 검거건수에서 공범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61.5%로 일본인 형법범 검거건수에서 공범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18.6%와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이고, 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범죄의 조직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sup>41)</sup>

### 3. 외국인 범죄수사의 문제점

이 글에서는 내국인의 일반적 범죄와 비교하여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피의자 수사과

39)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 p.428.

40) 원곡동 외국인밀집노동자의 주거형태는 공단 외부의 기숙사, 고시원, 보증금 없는 저렴한 월세, 연립주택의 지하 등에서 생활하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41) 김태명 외,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4, p.105.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sup>42)</sup>

첫째, 범죄수사의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문제, 신원과 거소 확인 문제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수사는 전국에 걸쳐 외국인 정보수집 등 동향파악에 근거한 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수사기관과 관련기관의 예산이나 인력지원 문제 등으로 활동이 미미한 실정에 있다.

둘째, 우리와 다른 문화, 습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통역인이 부족하다.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이 주요 국제통용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형사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외국인의 진술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통역인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최근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은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등의 특수 언어 통역인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범죄피의자의 신원확인이나 범죄경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은 90일을 초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규정(제 31조: 외국인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체류나 불법체류자의 범죄피의자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등 일련의 형사절차에 필요한 범죄자의 성명, 연령 등에 대한 정확한 신원파악이나 인터폴(Interpol)을 통한 국제수사공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범죄자들은 위조여권, 위명여권, 타인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사공조를 해야 하나 장시간이 필요하고, 호적제도가 정비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외국인은 거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재파악이나 신병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자와 범죄조직에 대한 첩보입수나 증거자료 수집·검거는 더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런가하면 외국인범죄자들은 미리 국외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범죄를 저지른 후 곧 바로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자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와는 재량적으로나마 범죄자 인도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나라와는 사실상 범죄자 인도가 어렵다.<sup>43)</sup> 외국인범죄에 대한 내국인이 참고인으로서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해도 외국

42) 이하의 내용은 박상준,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6, pp. 31-42; 김운곤, “외국인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조선대 법학논총, 2001, p.291 이하 등을 참조하였다.

43) 외국으로 도주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증거 및 정보의 수집, 여권의 진위확인, 피의자 인적사항의 확

인 피의자 가운데 동일성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증명하기 어려우며, 수사관들도 언어장벽으로 수사진행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여 전문통역인을 구한 후에 범법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소멸의 가능성이 따르고 있다.

넷째,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의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외교문제나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경우 외국 영사관원에게 통보하고 영사관원과의 접견·교통권 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변호인 접견과 교통지원 문제 등과 구금시설에서의 처우와 관련하여 외교 및 인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외국인범죄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내국인보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에는 외국인이라는 강한 권리의식, 타국에서 구속당하여 재판을 받는 불안감, 국내 형사사법제도를 잘 모르고 자백을 하면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의심, 범죄를 부인하면 바로 석방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관련된 경우에는 귀국 후나 자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등이 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임의출석이나 피의자로서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모국어로 번역하지 않는 한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섯째,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 인력이 부족하여 외사수사경찰은 과중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06년 현재 말 경찰인력은 95,613명으로 경찰 1인당 510여명<sup>44)</sup>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2006년 말 현재 체류외국인 910,149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외사경찰은 1,785명이 필요하다.

일곱째, 재판과정에서도 법원의 처리가 외국인이란 점에서 내국인보다 관대한 편이고, 재판확정 후 강제출국 조치를 고려해 실형선고 대신 집행유해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며, 집행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벌금형 선고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외국인범죄자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기소율은 물론 형량이 내국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 전과 확인 등에 대해 외국의 법제도, 수사기관의 조직, 수사방법의 차이 등으로 원활한 협조가 어렵다.

44)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검색일: 2007.8.10).

## IV.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전망과 치안대책

### 1.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전망

첫째,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의 범죄발생이 급증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외국인밀집지역으로 모여들게 되고, 이들이 조직화 집단화하면서 인종간의 갈등, 내·외국인간의 갈등, 범죄 조직간의 갈등 등으로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sup>45)</sup>

둘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슬럼화가 촉진될 것이다.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밀입국자 등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의 외국인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 저하, 외국인들의 실업률 상승 등으로 슬럼화가 촉진될 것이고, 이로 인한 한국사회 부적응 외국인 2세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외국인밀집지역은 이미 슬럼화가 촉진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과 태국, 몽골,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등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연방 국가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밀집지역으로 모여들어 조직화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불법체류외국인은 범죄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도 말 현재 전체 범죄(14,094,186명) 중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5%(704,709명)에 이르고 있다.

넷째,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조직에 의한 범죄가 흉포화되고, 범죄유형과 국적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전만해도 외국인범죄는 출입국사범과 과실

45) 일본의 2005년도 전체범죄건수 중 외국인 범죄건수는 7.7%, 영국은 전체수감자(8만여명) 중 외국인 수감자가 12.5%(1만명여명), 프랑스의 외국인 범죄는 60-70%(2004 경찰청 자료), 독일은 2005년도 총 범죄건수(2,313,136건) 중 22.5%(519,579건)가 외국인 범죄로 나타났다.

범, 외환거래위반 등의 경제사범과 절도 그리고 식의약품 밀수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여권 등 문서위조, 신용카드 위조, 밀입국, 사기결혼, 환치기, 전화금융사기 등 신종범죄까지 다양화되고 있다.<sup>46)</sup>

다섯째,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의 외국인의 집단화, 조직화, 정치세력화로 집단저항이나 대규모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신분과 인권문제, 임금체불, 강제추방, 사망자 시신의 본국송환, 상해 문제 등을 대변하고자 ‘이주노동자 노조’를 결성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노동자 인권센터와 ‘이주노동자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공권력에 대항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정치세력화하고 있다. 프랑스 아랍계 이민자들의 소요사태가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조직과 국제범죄조직이 연계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범죄로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여권위조와 밀입국관련 조직범죄, 전화금융사기, 금융사기, 신용카드 관련 범죄, 자금세탁 등 신종 국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외국인 마을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마을’에서 살인사건과 사소한 절도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마을에서도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 등에 의해 창출되는 대부분의 수익금이 불법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등 중동인들은 지하은행(하왈라)을 통해 외화를 불법송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불법체류자와 불법취업자들에 의한 외화불법반출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되고 있다.

아홉째, 체류외국인이 급증할수록 사회복지 비용이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체류 및 취업자,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들의 납세기피 현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 저소득 외국인의 납세기피로 인해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46)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p.94.

## 2. 외사경찰조직의 현황 분석

외국인 범죄를 관장하는 경찰조직은 경찰청에 외사국(외사기획과, 외사정보과, 외사수사과)이 있으며, 지방경찰청 단위에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남지방경찰청에만 외사과를 두고, 그 외의 지방경찰청에는 외사전담과가 없는 대신 정보보안과 내 외사계를 두어 국내체류자의 신원파악 및 외국인범죄를 관장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더욱 취약하여 전국 235개 경찰서 중 95개(40%) 경찰서에만 외사계가 있고, 그 외 140개 경찰서에는 정보보안과 또는 보안과, 보안계 내에 외사경찰관이 없거나, 1명 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 5월 현재 전국 외사경찰인원은 1,162여명으로 전 경찰관의 약 1.2%에 불과하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31개 경찰서 중에서 9개서는 외사경찰 7-10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25개서는 4-6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양적으로 매우 열악한 입장에 있다. 이외 김포공항경찰대, 부산공항경찰대,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제주공항경찰대에 90여명의 외사정보관과 외사수사관이 외국인에 대한 동향파악과 범죄수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sup>47)</sup> 그러나 2006년도의 경우 출·입국을 관할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총 출입국자 수(35,851,121명)의 73.6%(26,376,438명)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해 2,414,872명(6.7%), 부산 1,757,999명(4.9%), 김포 1,468,363명(4.1%) 인천 1,269,499명(3.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8)</sup>

결국 외사경찰은 열악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요청에 의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알선조직의 단속'에 동원되고 있어 인권침해, 외교문제 등의 여지를 안고 있다.

## 3.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대책

### 가. 외국인밀집지역 외사경찰 증원과 외사조직 재편

47) 2007년 5월 현재 경찰청외사국 자료;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2007.8.10 검색).

48) 법무부,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p.6.

### (1) 외사경찰 확충

외국인밀집지역 경찰서 중심으로 외사인력을 확충하여 체류외국인에 대한 첩보와 정보를 수집 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 범죄 예방활동이 선행되어야 외국인 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귀화인의 특별채용 후 동일인종 외국인밀집지역 배치

소수민족 배려차원에서 한인 2세 동포(중국, 러시아)나 귀화인(동남아, 아프리카 등)을 경찰관으로 일정비율 특별 채용하여 동일민족 외국인밀집지역에 배치하게 되면, 이들은 양국(모국+한국)의 문화, 풍속, 관습, 제도를 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대한 첩보·정보수집의 장점이 있어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자국인 피의자들의 진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어 외교적인 마찰이나 인권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 밀집거주 지역(2만여명)인 구로 경찰서는 중국동포출신 귀화인(중국동포 등) 2-3명을 경찰관으로 특채하여 중국인전담수사를 담당하도록 한 후, 주요 외국인밀집지역(외국인 마을)으로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sup>49)</sup> 최근 경찰동역 요원으로 근무했던 중국동포 출신 1명이 외사분야 경장으로 특채된 것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미국경찰은 경찰관 채용시 소수인종을 배려하여 각 인종마다 일정비율의 경찰관을 채용하여, 동일인종 밀집지역에 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LA경찰국의 경찰관 9,400여명 중 한국인 경찰관 1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한국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적 문제와 문화적 차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사회와의 교류 및 통역서비스(언어Bank)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LA경찰국은 LA 지역에 동양인(한인, 중국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동양인 수사과를 설치하여 팀장포함 7명의 동양인 수사관이 동양인 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있다.<sup>51)</sup> 오스트레일리

49) 법률적 문제, 국적별 경찰관 인력 확보 문제(1인당 담당 외국인), 예산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50) “경찰 최초 장애인 경찰관 임용”, <경찰청뉴스(<http://npa.news.go.kr>)>, 2007.6.8.

아의 경우는 소수민족 출신 경찰관과 소수민족연락관을 경찰서에 배치하여 상호이해 촉진 활동과 방법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 (나) 외국인 ‘정보원·연락관’ 활용

귀화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가칭 ‘정보원’이나 소수민족출신 ‘연락관’을 채용하여 동일민족 외국인밀집지역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이 중에서 소정의 활동을 수행한 우수한 자원이 외사분야 경찰관에 응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귀화인이 정보원이나 연락관으로 활동하게 되면 경찰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다) 외사수사 전담요원 확충

국제화시대 외국인 범죄수사는 수사 활동의 각종 단계에서 국제수사 공조와 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외국의 수사실무, 범죄정세 등에 관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이 필수적이고, 각국의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범죄도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범죄수사전담’ 요원 확충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밀집 및 범죄다발 지역에 외사수사전담 요원을 증원해야 한다. 체류외국인 100만254명(’07.8.24)에 필요한 외사수사전담 인원을 확보하여, 외국인 범죄다발지역과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에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국 수준의 외사경찰관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현재 전국 외사인력 현원은 1,162명으로 1인당 510명<sup>52)</sup>(체류외국인 1백만명)을 담당할 경우 799명(1,961명이 필요)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외국인밀집지역인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2006년 말 등록 체류외국인은 20,958명<sup>53)</sup>으로 이를 관리하는데 41명의 외사경찰이 필요하나, 현재 단원서 정보보안과 내 외사계 인력 5명(계장 1, 외사수사 4)이 1인당 5,240여명을 담당하고 있어, 1인당 510명을 담당하는 일반경찰관의 10배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

51) “외국경찰 자료수집 관련 보고”, LA경찰주재관, 2007.8.7.

52)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510명은 2005년 경찰관 1명이 담당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다(□□2006 경찰백서□□, p.451).

53) 안산시 통계정보 인구현황, <http://www.iansan.net>(검색일: 2007.7.28).

며, 불법체류자를 포함(35,000여명 추정)<sup>54)</sup>할 경우에는 69명의 외사경찰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셋째, ‘외사수사 경과제’를 도입하여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할 것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수사경과 요원을 확보하여 타 경과로 전과 금지하고 외사부서에만 근무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사수사 요원의 해외 파견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범하는 범죄는 모국문화(관습과 사회제도, 형사법 등)와 한국문화의 이질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전문수사관의 해외유학, 장기연수 등을 통해 외국인의 문화, 풍속, 관습, 사회제도를 체험시키고 폭넓은 국제교류경험을 겸비토록한 후, 외국인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사수사요원의 해외유학, 장단기 연수, 외국 자매결연 등을 통한 수사기관과 상호교류, 외국수사기관이나 수사연구기관에 파견, 국제범죄 및 조직범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외국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범죄예방 및 수사공조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㉔) 전문통역 요원 확보

현재 해외유학 및 근무경력자와 귀화자, 외국어학원 강사, 외국어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 통역요원을 수시 모집하여, 외국인 관련 사건수사 및 민원상담에 통역인으로 활용하고 있다.<sup>55)</sup>

첫째, 외국인 범죄사건 수사와 민원상담을 위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문통역인 선발고사를 통해 전문통역인 자격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격증 취득 후 통역활동을 수행한 우수자원이 경찰관 모집에 응시할 경우 가점부여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현재 경찰통역센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위촉 통역원은 수사나 상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통역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찰통역관으로 대처

54) 안산시청 공보실 발행 2007년 2월 28일자 보도 자료.

55)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민간통역인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는 1시간당 3만원, 기타 외국어는 3만5천원의 통역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도 제공하고 있다.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의경제도 폐지를 고려하여 현재 291명의 전의경 통역요원을 경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된 후, 중·장기적으로 민간통역인을 경찰통역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범죄사건에 대한 전담 ‘멘토(mentor)’<sup>56)</sup>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 등 일련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외국인범죄 사건마다 1명의 전문통역인이 전담하여 사건 종결까지 외국인과의 통역·번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멘토’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 인력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전담 ‘멘토’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교육기관·시민단체·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등과 함께 통역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어 통역원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예산상, 인력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학교,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등과 통역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해야 한다. 외국인밀집지역의 관할경찰서나 지구대는 관할내의 외국어학원, 대학교, 통역지원센터 등과 우선적으로 통역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요 외국인 사건에 대해서는 각국 주재 대사관 직원을 전문통역인으로 활용하여 인권 문제나 외교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인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 센터(2006.6.11)’와 ‘헬프라인(2007.2.21)’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통역인에게 형사절차의 이해를 돕는 ‘통역핸드북’을 배부하여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에 통역센터를 운영하고, 통역인에게 형사절차의 이해를 돕는 통역핸드북을 배부하는 등 외국인 범죄수사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56) ‘멘토(mentor)’는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집안일과 아들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그의 친구인 멘토에게 맡긴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충실한 조언자,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스승, 좋은 지도자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㉞)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첫째, 소수민족의 문화교과목 등 외사요원 양성 교과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 시대의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국제 감각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경찰중앙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체류외국인 민족(소수민족)의 문화(언어, 관습, 풍속, 제도) 등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소수민족의 문화, 법제도, 풍속, 관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은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사 기획·정보·수사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수사지휘과정과 조사전문화과정에도 별도의 국제범죄수사 과목이 할당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 내용은 체류외국인에 대한 신원파악 요령과 처리절차, 영사관 통보 절차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사항, 외사정보와 외사보안활동, 외사경찰과 국제회의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사수사 전문교육기관을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사전문교육기관’을 개설한 후, 동 기관에서 외사수사경과로 선발된 신입경찰자원은 기본교육을 받은 후 외사부서 시보로 1년 이상 실습경력을 갖추도록 한 다음, 다시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사이버관련 교육 등 외사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외사경과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사경과를 받은 후에도 매 3~4년마다 외사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정의 단기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청 국제수사연구소는 국제수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국제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경찰관 중에서 다시 적격자를 선정하여 현지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외사전문교육기관인 가칭 ‘외사수사연수원’을 개설하여 국제범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사경찰 조직 재편**

첫째, 지방경찰청 외사수사과를 외사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

국인 수요가 많은 서울·부산·경기·인천지방경찰청의 외사과를 외사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에 외사과를 시범 운영한 후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총인구 350,250명 중 원곡동 일원에 30여개국 35,000여명(등록외국인 20,958명)의 외국인들이 밀집거주하고, 음식점 등 외국인 전문 상점도 150여 곳이 성업 중에 있는 다민족 다문화 지역으로 안산시가 원곡동 ‘외국인 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sup>57)</sup> 단원경찰서 내 외사계를 외사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단원경찰서 외사과를 시범운영한 후 분석·평가를 통해, 1차적으로 외국인밀집지역 관할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독립시키고, 2차적으로 외사계를 외사과로 모두 독립 승격시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인원, 기존조직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축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5천명 이상 외국인밀집지역 관할경찰서에는 외사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경기 지방경찰청의 경우 5천명 이상 외국인밀집지역 관할서인 양주서, 포천서(이상 1만명 이상), 파주서, 일산서, 남양주서, 수원중부서, 성남수정서, 성남 분당서, 안성서 등에는 외사계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만명 이상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가칭 ‘외국인 수사지원계(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 밀집거주 지역(2만여명)인 구로구 경찰서는 중국동포출신 2세의 경찰관을 채용하여 중국인 범죄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가칭 ‘외국인 수사지원계(과)’를 신설하여 시범 운용한 후, 외국인밀집지역에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외사부 산하에는 가칭 ‘외국인 수사지원과’를 두고 ‘동포 지원계’, ‘동남아·동북아 지원계(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아프리카 지원계’, ‘유럽지원계’, ‘북미·남미지원계’ 등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57) 안산시청 공보실 발행 2007년 2월 28일자 보도 자료.

## 나. 제도개선

### (1) 출입국현황전산망을 통한 외국인정보 실시간 공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출입관리 및 체류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하여 출입국사범을 적발·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범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출입국현황전산망을 통해 출입국관리국사무소에 축적된 정보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경찰서에 연결된 출입국현황전산망은 단순 출입국현황만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피의자 검거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에 있다.

### (2)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첫째, 유관기관과의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외국인범죄 처리는 업무 성격상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노동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등 외국인범죄 관련 기관과의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기관간의 정기적인 접촉과 정보교환을 통해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공관, 공항과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범인의 신원파악과 출입국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범 정부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과 연관된 시민단체, 회사 등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외국인근로자 인터넷 방송’<sup>58)</sup> 외국인노동자 무료 검진<sup>59)</sup> ‘아시아 공동체학교’(부산), ‘이주노동자 상담소’<sup>60)</sup> ‘다문화축제’<sup>61)</sup> 등 외국인지원 행사와 시민단체 등에 ‘범죄

58) 경기도 오산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터넷([www.owcc.or.kr/gnu4/omwradio.html](http://www.owcc.or.kr/gnu4/omwradio.html)) ‘오산이주노동자라디오방송국’(오산노동자 문화센터)이 설립되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5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보건소는 2006년 8월 24일부터 매월 2차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60) 의정부이주노동자 상담소, (사)국경없는마을(안산시 단원구) 등 2007년 8월 현재 총 70여개 센터가 운

상담소' 운영과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할 것이다.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체류외국인이 취업 중 주의사항, 한국 소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형사법제, 문화(관습, 풍속, 제도 등) 등에 대한 동영상물과 범죄예방 광고물, 표어,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치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밀집지역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는 외국인 지원 시민단체 인사나 지역인사(유흥협회, 상가협회 등) 등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외국인 치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교환과 범죄예방에 대한 공동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외국인지원정책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경찰은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인 '방문취업제', '외국인 이민 허용정책', '자진귀국', '한국어능력시험' 등과 연계하여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3)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

지문채취관리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동일성 확인과 범죄경력을 관리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장·단기 체류자들 모두에게 지문날인을 확대하여 외국인 범죄경력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자카드 전산화를 통해 사진을 포함한 지문, 인적사항, 범죄개요, 이름, 국적, 성별, 연령, 범죄유형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불법체류율이 높은 산업기술연수생, 동남아, 중동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 연령과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지문날인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4)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첫째, 유관기관과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주한공관, 경제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이익단체(중소기업협의회, 건설협회, 요식업협회 등) 등

용되고 있다(<http://migrant.kr>, 2008.8.10검색).

61) 2007년 6월 3일 잠실운동장에서 다문화축제를 시행한 바 있다.

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외국인밀집지역에 모여들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문제와 범죄 현황을 적극 홍보하여 범죄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언론기관을 통하여 외국인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언론홍보는 불법체류외국인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온정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외국인의 범죄 실상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sup>62)</sup> 외국인범죄 홍보는 인종차별문제, 외교적 마찰 문제 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과 민간단체, 외국인 지원단체 등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고, 경찰은 이들 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외국인의 범죄 실태와 한국의 형사법제를 적극 홍보하고, 각종 설문조사, 정책발표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밀집지역인 안산 단원경찰서 원곡 지구대에 외국인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한 후, 외국인밀집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구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신고요령이나 대처방안 등과 아울러 한국의 형사법, 출입국관리법, 문화, 제도, 관습,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민원게시판 등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류외국인 관련단체와 국내 지원단체 홈페이지에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성향, 범죄대책 등을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밀집지역과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구대나 치안센터에 외국인이 언제든지 찾아 갈 수 있는 가칭 ‘외국인 쉼터’를 제공하여 경찰관과의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쉼터에는 컴퓨터,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의 형사법, 출입국관리법, 문화 등 외국인이 한국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홍보자료 비치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모색해야 한다.

62)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p.111.

### (5)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최근 외국인 범죄 중에서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각종 조회, 증거자료 수집, 범법자 신상명세 등의 의뢰와 총기, 마약 거래, 돈세탁 등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간의 정보교환, 협력과 공조 등에 힘써야할 것이다.

### (6) 외국인밀집지역 주민(외국인)과 합동순찰

최근 ‘외국인 마을’에서 살인사건과 사소한 절도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 마을’에 ‘자치방범위원회’를 결성하여 경찰과 합동 순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은 빈곤이 재생산되고 범죄가 빈발하는 슬럼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밀집거주지역, 외국인 거리와 유흥업소, 외국인 범행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정보원과 합동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 가리봉동의 ‘구로구 예멘동’(중국인 및 중국동포 1만명)은 화교 또는 중국동포 정보원을 통한 첩보·정보수집과 합동 순찰 강화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안산시 원곡동(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우즈베키스탄인, 몽골인, 네팔인, 방글라데시아인),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성동구 성수공단, 혜화동성당 인근의 ‘리틀마닐라’(일요일 밀집)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7) 외국인밀집지역 위치추적 지도 제작활용

외국인밀집지역 위치추적(GPS) 지도를 제작하여 범죄발생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 (8) ‘범죄 없는 거리(마을)’ 조성

경찰은 외국인밀집거주지역이나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들과 개별상담을 통해 범죄예방을 조언하는 ‘범죄예방상담소’<sup>63)</sup> 운영, 외국인 범죄지역 비디오 감시, 길거리 농구,<sup>64)</sup> 교통교육, 범죄위험 전파, 외국인치안서비스,<sup>65)</sup> 범죄유혹에 대한 역

할연기와 퀴즈대회, 도보순찰강화로 경찰존재 과시, 경찰교양악단 연주회 등의 행사 주관으로 가칭 ‘범죄 없는 거리(마을)’를 조성하는 등의 범죄예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 V.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체류외국인들의 급증과 더불어 외국인밀집지역이나 외국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범죄가 점차 조직화, 전문화, 국제화, 정치세력화, 다양화, 흉포화, 지능화, 공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지역의 슬럼화, 국내 노동시장 잠식에 따른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갈등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치안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범죄 실태파악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첩보입수의 어려움, 외사수사 전담인력의 부족, 외국인 피의자와 언어소통문제, 인권과 외교문제, 민족·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예방과 문제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업주,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로 외국인 체류현황과 실태 파악, 외국인 범죄 신고접수 현황과 발생건수 분석·평가, 불법체류자의 범죄현황, 죄종별·국적별 범죄통계 정리, 범죄경력관리와 밀집지역 지도제작 등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인권침해와 외교문제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치안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류외국인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들의 사회갈등을 최소화

63) 독일의 ‘범죄예방상담소’는 수사경찰이 시민들과 개별상담을 통해 범죄예방을 조언하는 제도로, 동 상담소에는 각종 범죄예방 안내책자(청소년, 약물, 성폭력 등), 유인물 등을 전시한다.

64) 지역사회 유관단체들과 공동주관으로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경찰관들과 외국인들이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 과정에서 방법 의견청취와 범죄예방 협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5) 외국인치안서비스로는 상담서비스, 쉼터서비스, 문화지원서비스, 여성상담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의 사회문화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안목 하에서 치안대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체류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자진 귀국하여 지인들이나 이웃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거나 한국제품을 소개·애용하고, 국가간 외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될 수 있다. 즉, 체류외국인은 한국의 홍보대사이자 잠재적 고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현웅,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보고서, 2004.
- 경찰청, □□경찰백서□□, 2003; 2005; 2006, 경찰청.
- 경찰청 외사국, □□각국의 체류외국인 관리실태□□, 경찰청외사국, 2007.5,
- 김만일,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석사학위논문, 2001.
- 김민재,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법무연수원, 2007.
- 김병준,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00.
- 김영규 외,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Ⅱ)□□, 법무연수원, 2004.
- 김운곤,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조선대, 2001.
- 김운영,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일만, “외국인의 불법취업과 범죄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학위논문, 2000.
- 김태명 외,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4.
- 김태영, “통독 이전 동독이주민 유입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2002.
- 독일경찰주재관,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 2007.8.9.
- 동경경찰주재관,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에 관한 日경찰자료 보고”, 2007.8.8.
- 대검찰청, □□검찰지식리뷰□□ 2호, 대검찰청, 2005.7.28.
- \_\_\_\_\_, □□2006 마약류범죄백서□□, 도서출판성민, 2007.
- 박광민,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계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학술진흥재단, 2002.
- 박상기 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박상준, “외국인범죄 수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학위논문, 2006.
- 박장식, “미국, 캐나다 범집행기관 연구”, 경찰청, 2003.
- 법무부, “미국·일본 체류관리행정 과학화 실태조사보고서”, 법무부 체류심사과, 2003.
- \_\_\_\_\_, □□외국국적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도□□, 법무부, 2007.2
- \_\_\_\_\_, □□200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 \_\_\_\_\_,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2007.8.24.

- 서거석,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비교형사법연구□□ 5권1호, 2003, pp. 421-450.
- 손봉선·신환철, “외국인 범죄의 합리적 수사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권, 1999.
- 신진규, □□형사정책 I □□, 법문사, 1997.
- 양문승·이기호, □□불법체류자 신원파악 실태와 관리방안□□, 치안연구소, 1996.
- LA 경찰주재관, “외국경찰 자료수집 관련 보고”, 2007.8.7.
- 영국경찰주재관, “영국의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 2007.8.3.
- 오경석·정건화,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  
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6, pp.72-93.
- 이동재,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범죄연구”, □□해외파견검사 연구 논문집□□ 제21집 2권, 대검  
찰청, 2006.
- 이승희, “외국인 노동자의 일탈성향 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2005.
- 이윤영,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실태와 대책”, 고려대석사학위논문, 2002.
- 임준태, “동서독 통일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치안논총□□ 제18집, 치안연구소, 2002.
- ,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 -독일경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보□□ 제4호, 한국경찰학회, 2002.8.
- 장준호,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2002.
- 진정무 외, □□수사연구□□ 2006년 12호, 수사연구사, 2006.
- 최성규,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석사학위논문, 2005.
- 최인섭·최영신,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p.201-202.
- 파리경찰주재관, “외국인밀집지역 치안대책 관련 보고”, 2007.8.8
- 鮑 棟, “외사경찰의 범죄예방 대책역량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논문, 2003.
- 하성규·고성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4호,  
2006, pp.9-31.
- 홍원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변화와 과제”, □□민족연구 28□□, 2006, pp.87-127.
- 황인정,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공조”, □□검찰□□ 통권 제104호, 대검찰청, 1992.
- 기타 경찰청 외사국 자료, 법무부, 검찰 등의 통계 및 인터넷, 신문기사 자료 등.